

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추연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-173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. 5.

발의자 : 추연호 의원 외 6 명

1. 제정이유

-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예우를 함으로써 주민들로 부터 존경 받고 궁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건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병역명문가 지원 사항 및 적용범위 규정(안 제3조 ~ 안 제4조)
- 병역명문가 예우 및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병역명문가 우대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안 제8조)

3. 제정조례안 : 붙임1

4. 관계법령 발췌서 등 : 붙임2

5. 예산수반사항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6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7. 기타 참고사항 : 집행부검토의견서

【붙임 1】

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병역명문가”란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.
- “예우대상자”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“예우대상자 가족”이란 예우대상자의 모, 배우자, 자녀를 말한다.

제3조(병역명문가 지원)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 관할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제4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.

제5조(예우 및 홍보)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.

- 주요 행사·축제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
 -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·격려
 - 「시 포상 조례」에 따른 모범 병역명문가 포상 및 감사패 수여
 -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
 - 시 주요 간행물 배부
 -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시장은 안산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6조(우대)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·운영(위탁운영을 포함 한다)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·입장료·수강료·관람료·주차료 등(이하 “사용료 등”이라 한다)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예우 대상자 가족이 동반 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.

제7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시장은 시에서 설치, 관리,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과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 의 원	추연호 대표발의 (행정 3570)

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8-173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. 6. 24.
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수정이유

-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따른 적용 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적용 대상 중 “그 가족”을 안 제2조에 정의 되어 있는 “예우 대상자 가족”으로 수정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. (안 제4조)

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**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
과 같이 수정한다.**

안 제4조 중 “그 가족” 을 “예우대상자 가족” 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정안
제4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<u>그 가족</u> 에게 적용한다.	제4조(적용범위) ----- <u>예우대상자 가족</u> -----.